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징 계 · 주의 요구

제 목 광주○○○○전람회(○○○○) 보조금 관리 · 감독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징 계 대상자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징 계 의 종 류 경징계

훈 계 대상자 ① 광주광역시 ○○○○관 지방○○○ ○○○  
(전 ○○○○○○과 지방○○○○○)

② 광주광역시 ○○○○과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는 2016. 1. 16.부터 2017. 1. 9.까지, 지방○○○○○ ○○○은 2016. 1. 24.부터 2017. 7. 20.까지, 지방○○○○ ○○○는 2016. 1. 16.부터 2017. 7. 20.까지 ‘광주○○○○전람회(○○○○)’ 사업의 실무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광주광역시(○○○○○○○과)에서는 (사)○○○○○○○ ○○○○○지회(이하 ‘○○○○’라 한다)에 지역미술시장 활성화 및 ○○○○○○○○○과 연계를 통한 세계적 미술도시로 발전 도모하고자 광주○○○○전람회(○○○○) 사업에 2015년 4억원(국비 1.6억, 시비 2.4억) / 2016년 5억원(국비 2억, 시비 3억)의 보조금

을 지원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보조금의 교부조건)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 교부목적외 사용금지, 사업변경, 중단, 인계, 폐지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사업별 전용통장개설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유리알 카드) 사용, 사업실적 및 정산서류 제출 기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보조사업에 따른 수익금에 대한 처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청인 위 관서에서는 투명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과 사업이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보조사업 정산 미실시

위 관서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에 아래 [표1]과 같이 보조사업이 끝난 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 증빙서류(관련자료, 행사사진,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보조사업자는 2015년 및 2016년 광주○○○○전람회(○○○○) 정산서류를 각각

499일, 105일 지연하여 제출하였다.

[표1] 광주 ○○○○회(○○○○) 보조금 정산 내역

구 분	사업기간	제출기한	정산서 제출일	정산 확정일	지연일수
2016년	4월~12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	2017. 6. 14.	2017. 6. 19.	105일
2015년	3월~12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2017. 6. 14.	2017. 8. 24.	499일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금 정산서를 위와 같이 늦게 제출하였음에도 관리·감독청인 위 관서에 서는 2016. 7. 18.부터 2017. 6. 28.까지 총 26회에 거쳐 이메일로 정산서 제출을 촉구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015년 및 2016년 광주○○○○전람회(○○○○)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sup>44)</sup>가 있고서야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 제출을 독촉하는 정식 공문<sup>45)</sup>을 보냈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익년도 사업의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2016년 5억원(국비 2억, 시비 3억 / 지급일 2016. 4. 19.), 2017년 5억원(국비 2억, 시비 3억 / 지급일 2017. 4. 3.)을 광주○○○○전람회(○○○○) 보조사업자(○○○○)에게 전년도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정산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 2. 보조사업자의 수익금 관리 등 회계처리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4, 「지방보조

44) 청구자 : ○○○○갤러리 대표 ○○, 1차 정보공개청구(2017. 1.16.), 2차 정보공개청구(2017. 6. 5.)

45) 1차 촉구 : 2017. 4.27.(2015년 정산서 요구), 2차 촉구 : 2017. 6. 5.(2015~2016년 정산서 요구)

금관리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페어) 교부조건 등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 통장을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전용카드(유리알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에서는 수익금 계좌에서 지출증빙서류 없이 인건비 등 8건 14,100천원을 지출, 미술작품 29,228천원 구입,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성과금 11,000천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수익금 계좌에서 ○○○○회장(○○○)에게 근거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10,169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법인명의 통장이 아닌 개인통장(○○○, ○○○○사무국 ○○직)으로 티켓수입, 인건비, 성과금, 업무추진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실제 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 3. 보조사업자의 계약관련 법령위반

광주 ○○○○회(○○○○)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일반)」 제8호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와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하여 입찰공고를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은 아래 [표2]와 같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고 (주)○○○(195,700천원)과 ○○○충전소(137,432천원) 등의 업체와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2년간(2015~2016년) 총 7건에 395,962천원을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일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1	2016. 8. 12.	부스제작 및 설치	100,000	(주)○○○
2	2016. 8.	○○파티 무대설치	27,830	(주)○○○○○
3	2016. 8. 10.	광주○○○○ 도록 제작	35,000	(주)○○○
4	2016. 6. 23.	2016 광주○○○○ 홍보물 제작	61,209	○○○○○○
5	2015. 8. 1.	2015 광주○○○○ 홍보물 제작	54,223	○○○○○○
6	2015. 8. 1.	2015 광주○○○○ 도록 제작	22,000	○○○○○○
7	2015. 8. 29.	부스제작 및 설치	95,700	(주)○○○

※ 광주광역시 제출자료 재구성

결과적으로 위 관서에서는 ○○○○이 정산서 제출을 지연한 점, 보조사업으로 많은 수익금이 발생함에도 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수익금에 대한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법한 사업비 집행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를 위반한 사항으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2017년 광주 ○○○○전람회(○○○○) 보조사업자로 부적정하게 ○○○○을 또 다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관련자들은 과중한 업무를 이유로 법령상 위법·부당함을 알고도 광주 ○○○○전람회(○○○○)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들 중 지방○○○○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징계] 위 관련자 중 법령상 위법임을 알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실무담당자 지방○○○○ ○○○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위 관련자 중 지도·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실무책임자 지방○○○ ○○○와 지방○○○○○ ○○○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2018년도 광주○○○○전람회(○○○○어)’ 사업은 공모(필요시 전국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② 앞으로 위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감독업무를 철저히하시기 바랍니다.